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 | |
|----------|------|
| 의안 번호 | 1808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면적(m ²) | | | 구성비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합계 | 6,971.6 | - | 6,971.6 | 1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감)6,791.9 | 179.7 | 2.6 | - |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증)6,791.9 | 6,791.9 | 97.4 | |

- 결정(변경) 사유서

| 대상지 위치 | 면적(m ²) | | 면적(m ²) | 비고 |
|--------------------|---------------------|------------|---------------------|--|
| | 기정 | 변경 | | |
| 노원구 공릉동 365-4번지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 6,79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

3. 추진경위

- '19.6.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발표
- '19.9.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5개소)
- '19.9.~'20.4. : 시범사업 TF회의(5회), 자문단 자문(3회)
- '20.5.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노원구)
- '20.6. :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노원구)
- '20.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구→시)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등

- 가. 공람기간 : 2020.5.16. ~ 5.29.(14일간)
- 나. 주민 제출의견 : 없음
- 다. 관계부서 의견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1.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1부.
2. 관계부서 협의의견 1부.

※ 작성자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전정훈 (☎ 2133-8319)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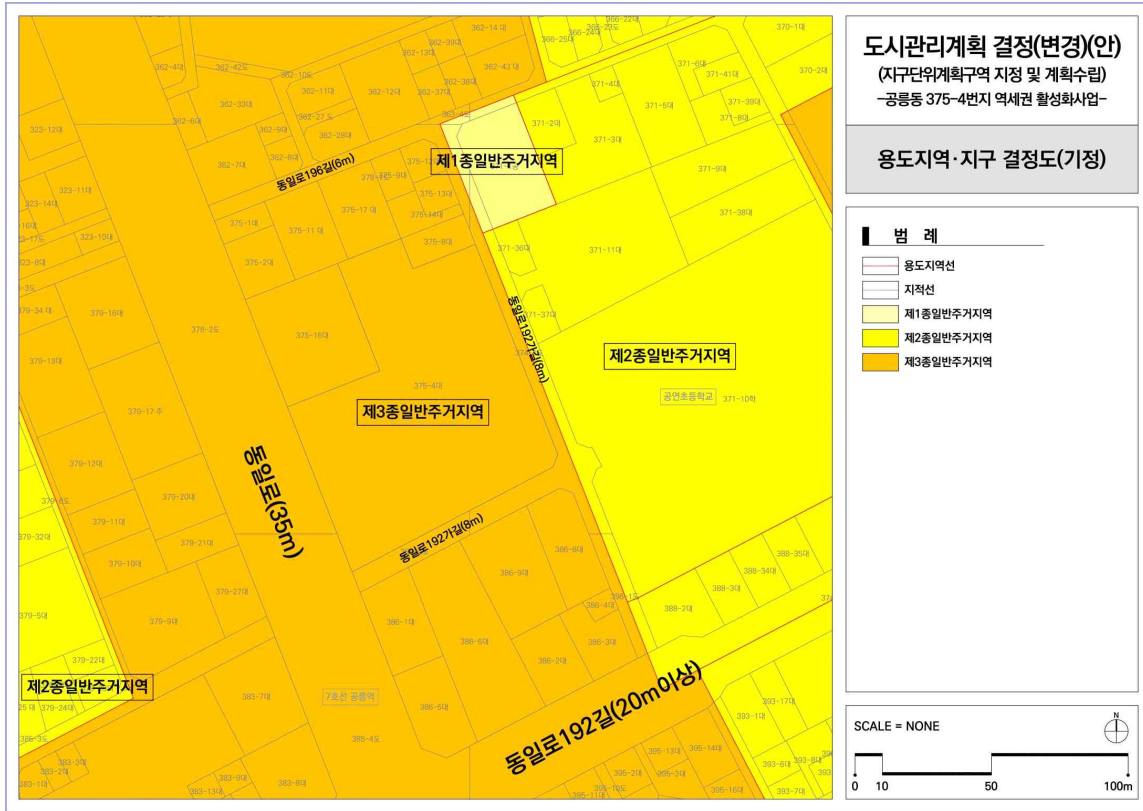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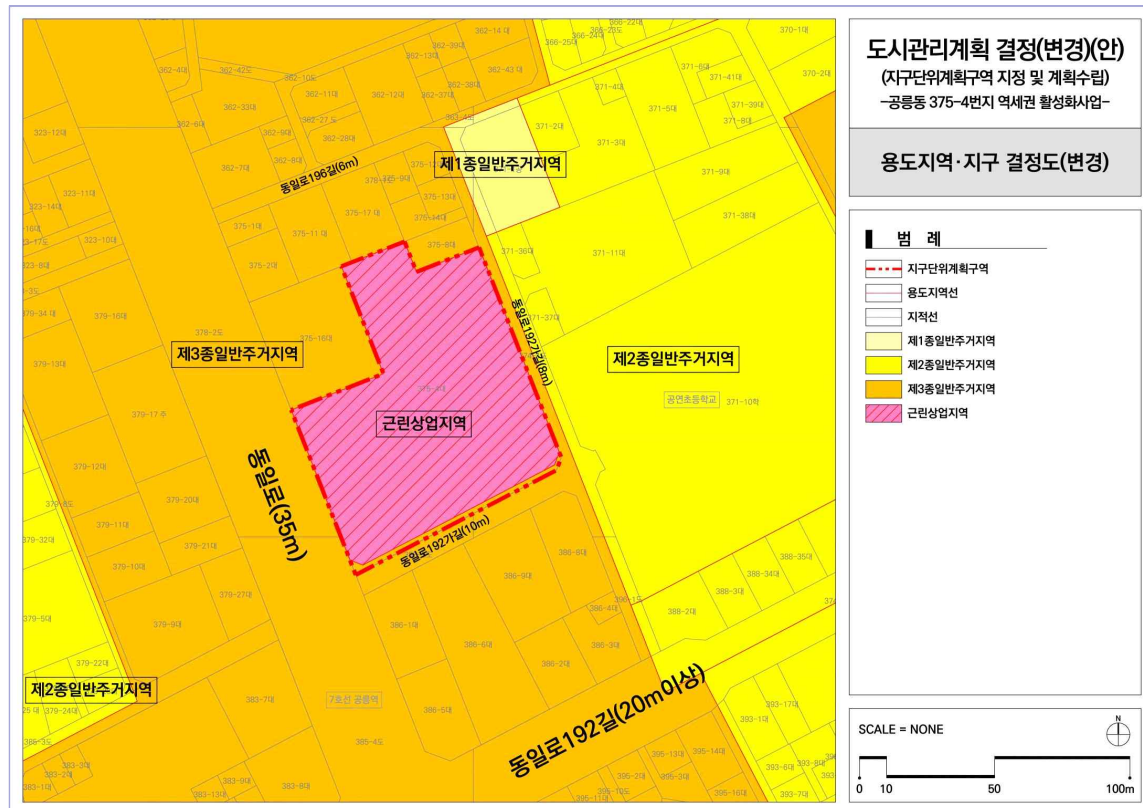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 기 정



○ 변경



| | |
|------------|--|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련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 |
|------------|--|

□ **협의의견**

| 부서명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비고 |
|----------------------|---|---|----|
|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지정 제3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 용도지역 현황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중심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적정성 검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릉역 일대는 저이용·비활성화된 실정으로 수요는 높으나, 집객시설 부재로 청년계층의 소비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역세권활성화를 위해 집객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내 부족시설을 확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후 관련 위원회 심의시 적정성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음. | 반영 |